

수원고등법원 2021. 5. 20 선고 2020나21516(본소), 2020나21523(반소), 2020나21530(반소)
판결 [주식매매대금반환 청구 · 주식인도청구 · 주식인도청구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

1. A
2. B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

담당변호사 이항영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

D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

변 론 종 결 2021. 4. 15.

판 결 선 고 2021. 5. 20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8가합11711(본소), 2019가합 10128(반소),
2019가합21456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 한다) A에게 612,000,000원, 원고 B에게 459,000,000원, 원고 C에게 612,000,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1) 원고 C에 대한 반소[2020나21523(반소)]

원고 C은 피고로부터 18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한 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E 주식회사에게 위 주식 양도통지를 하라.

2) 원고 A, B에 대한 반소[2020나21530(반소)]

원고 A은 피고로부터 118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E 주식회사에게 위 주식 양도통지를 하라.

원고 B는 피고로부터 63,5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E 주식회사에게 위 주식 양도통지를 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,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

같은으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8면 하3행의 “을 제8, 27호증”을 “을 제8, 27, 32호증”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9면 11행의 “선고된 사실”을 “선고되었고, 이후 위 원고들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”로 고쳐 쓴다.

2. 결론

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제정, 판사 박광서, 판사 차지원

목 록

1. E 주식회사[대표이사 D]가 발행한 1주당 액면금 500원인 A 명의의 기명식 보통주
72,000주
2. E 주식회사[대표이사 D]가 발행한 1주당 액면금 500원인 B 명의의 기명식 보통주
54,000주
3. E 주식회사[대표이사 D]가 발행한 1주당 액면금 500원인 C 명의의 기명식 보통주
72,000주. 끝.

